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인식 의원 발의〕

의안번호	2353
------	------

발의일자 : 2023. 5. 31.

발 의 자 : 이인식 의원

찬 성 자 : 엄셋별, 고성미의원

1. 제안이유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바, 자립준비청년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 수요를 반영하고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에 일원으로 성장·정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명 변경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 나. 조례의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 (안 제1조 ~ 제3조)
- 다. 자립준비청년 등에 대한 지원사업 (안 제4조)
- 라. 자립준비청년 등에 대한 실태조사 (안 제5조)
- 마. 사무의 위탁 및 예산지원 (안 제6조 및 제7조)

바. 협력체계 구축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
-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
- 3) 「지방자치법」 제13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예산조치

다. 기 타

- 1) 입법예고: 2023. 6. 1. ~ 2023. 6.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
1항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
소한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
대상아동을 말한다.
3. “퇴소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
로서,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

을 말한다.

4. “자립준비청년 등”이란 자립준비청년과 자립지원대상아동, 퇴소청 소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등 자립 지원사업
2. 안정적 주거를 위한 지원사업
3. 진로·진학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4. 인성 및 직업교육 지원사업
5.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을 위한 교육 및 재정관리 지원사업
6. 신체적·정신적·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
7. 후견인 제도 지원 및 후원 연계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자립준비청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제4

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11. 16.]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219호, 2021. 11. 16.,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있는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퇴소청소년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
 - 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
2.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이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의 우선 적용대상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거나 구가 관리하는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 적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의 퇴소청소년 등에 대해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발굴·시행할 수 있다.

1. 주거 · 생활 · 교육 · 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정착금 지원 및 자산형성 지원(금융 컨설팅)
3. 인성 및 직업교육 지원
4.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
5. 정서적 · 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
6. 후견인 및 후원 연계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보호기간 연장)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퇴소청소년 등에 대하여 그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기간이 종료된 이후 해당 퇴소청소년 등의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단체 및 시설 등을 통하여 보호조치할 수 있다.

제7조(자립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구청장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 · 자활을 위한 자립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센터 운영의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예산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퇴소청소년 등을 위하여 아동 · 청소년 분야 전문가, 단체 및 시설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219호, 2021.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아동복지법」

[시행 2022. 6. 22.] [법률 제18619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②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등 보전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가정 복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을 상담·치료한 의사의 의견을 들은 후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조치가 보호대상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다만, 보호대상아동이 복귀하는 가정에 거주하는 아동학대행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삭제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아동학대의 재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아동학대 재발의 위험이 현저하여 긴급히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제16조의3(보호기간의 연장)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보호조치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보호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자립 능력이 부족하여 보호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료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보호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2.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사람을 계속하여 보호·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 2022. 4. 21.] [법률 제18101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16조(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연구·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보호, 자립 지원,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